



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 안내

군산한들고등학교
2020. 5. 19.

홈페이지 <http://www.kunsannam.hs.kr/> 교무실 451-2915 행정실 451-4208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. 개인단위 등교중지학생에 대한 출결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.

1. 기본원칙

교육부훈령 제331호 및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,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교 대응 절차에 따라 출결처리

2. 코로나 관련 본교 출결처리

대상	대상	등교중지기간 / 조건	출결처리	증빙자료
등교중지 대상	확진학생	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 까지	출석인정결석	○ 입원치료 통지서 등(보건소 발부)
	의사학생	14일		○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(보건소 발부)
	조사대상 유증상학생	14일		○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(보건소 발부)
	자가격리학생	14일 가족(동거인)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 까지		○ 격리통지서 등(보건소 발부) ○ 가족(동거인)의 격리통지서, 학부모 의견서 등
	유증상학생	증상발현 후 3~4일 *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		○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, 학부모 의견서, 진료확인서 등
등교중지 대상 외	고위험군학생 * 의사의 소견을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(폐질환, 만성 심혈관질환, 당뇨, 신장질환, 만성간질환, 악성종양, 면역저하자 등)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심각', '경계'	출석인정결석	○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(기저질환 민감군)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제출해야 하며,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(소견서)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○ 장애: 보건복지부 '장애복지카드' 소지자(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)에 한함
	교외체험학습 (가정학습)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심각', '경계'	질병결석	○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"가정학습"을 포함
	기타결석 (감염 우려)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심각', '경계'	기타 결석	○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, 학부모 확인서 등
	미인정 결석	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	미인정 결석	

- (유의사항)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·졸업 불가

2020. 5. 19.

한 들 고 등 학 교 장

